

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

1. 개정사유

선박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압항부선에 대한 선박검사에 있어 그 결합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, 그 밖에 해상에 고정된 상태로 설치된 위험물저장 부선은 만재흡수선을 표시하여야 하는 선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· 보완하기 위함.

2. 시행일자 : 2006. 10. 23

3. 주요개정 내용

- 압항예 · 부선의 선박검사준비사항 신설
- 해상에 고정적으로 설치된 위험물저장부선 등은 만재흡수선 표시대상에서 제외됨
- 종전 무선설비 설치 면제 선박(여객선 : 10톤미만 · 10마일미만 항행선박, 여객선의 선박 : 20톤미만 · 10마일미만 항행선박)의 폴/DSC 설치시기 요건변경(여객선 → 2007. 1. 1까지 설치, 일반선 → 2009. 7. 1까지 설치)
- 종전 VHF무선설비 설치의무 선박(평수구역 항행선박)의 VHF/DSC설치시기
 - 여객선 : 2007. 1. 2이후 VHF무선설비를 교체할 경우 → VHF/DSC설치
 - 일반선 : 2009. 7. 2이후 VHF무선설비를 교체할 경우 → VHF/DSC설치
 - ※ 여객선이 2007. 1. 1이전 도는 일반선이 2009. 7. 1이전에 VHF무선설비를 교체할 경우 VHF/DSC가 아닌 VHF무선설비로 교체 가능
 - ※ 2005. 10. 26이후 도입선은 개정된 규정 적용
- 「해운법」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이 추단파대무선설비로 위치보고 등이 곤란한 경우 추단파대무선설비외에 중단파대무선전화를 설치하여야 함.

선박법시행규칙 일부개정

1. 개정사유

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박등록과 관련한 일부 제도를 개선 · 보완하려는 것임.

2. 시행일자 : 2006. 11. 2

3. 주요개정 내용

- 선박을 소유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의 명칭과 법인등록번호로 대체
- 선박원부의 등 · 초본의 교부신청, 선박원부의 열람신청, 등록사항의 변경신청 및 선적증서원부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등의 민원행정업무를 모든 지방청에서도 수행하도록 함

선박 및 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시험 및 검정에관한기준 개정

1. 개정사유

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개정사항 수용, 선박소방설비기준 제21조의1(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) 성능기준 반영 및 미비점 보완

2. 시행일자 : 2006. 12. 1

- 방수복(Ⅲ) 성능시험 106) 원단의 인장강도에 대하여는 2008. 1. 1부터 시행
- ※ 2008. 1. 1이후 그 이전에 형식승인 받은 방수복이 원단교체를 위한 형식승인 시험시는 (Ⅲ) 성능시험 106의 “(1) 내지(11) 라. 재료시험 및 부품시험”은 생략 가능

3. 주요개정 내용

- 염수분무시험, 진동시험 및 고온도 시험등 13개 환경시험기준 개선
- 구명설비 만셀색도를 폐지하고 눈에 잘 띄는 색으로 개선
-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성능기준 마련
- 자장식호흡구 용기 내부에 부식등 확인시험 신설
- 방수복 시험기준중 인장강도 시험기준 국제표준화(ISO규격 반영)
- 간이항행기록장치(S-VDR) 시험기준 마련